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23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

| 성 명 | 생년월일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의 주요내용   |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김○준 | 1994. 6. 30. | 경기도 고양시<br>덕양구 행신로<br>336번길<br>(이하생략) | 국민취업지원제도<br>행정처분 사전통지 및<br>의견제출서 | 유선 및 출석 통지 2회에도<br>상담에 응하지 않아<br>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<br>취업지원 종료 | 동 서류를 2021년 5월 1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<br>송달 불가(폐문부재) |

4. 공고기간: 2021. 6. 23. ~ 2021. 7. 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안민수(Tel. 031-920-39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